

第1種

損害査定業務委託契約書

2016.4月

同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禁합니다.

□ 요율의 가감 적용

1. 요율은표준요율을 원칙으로 하되, 위임인은 난이도, 투입시간, 조사자의 전문성 및 노력도 등 위임대상의 특성에 따라 가(감)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..
2. 위 1항과 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본요율 ×(1+1항 가산율)의 방식으로 최종 요율을 적용한다.

□ 현장활동 보수 (손해사정금액 10억 초과건)

1. 기준 : 현장활동 5회 초과 + 총동원인원 10인 초과
2. 대상 : 현장활동 1회당 업무시간 6시간 이상 (이동시간 포함)
3. 경력별 보수

경 령	인당 보수
5년 미만	10만원
10년 미만	20만원
10년 이상	30만원

※ 적용례 : 조사자 2인(10년 미만)이 현장조사 10회 실시

① 현장활동 10회(>5회)이고 총인원 20인(>10인)으로서 보수 적용기준 충족

② 적용보수 = 10인 (20인-10인)×20만원(10년 미만) = 200만원

※ 상기 보수 적용인원(10인)에 대하여 일비 중복적용 불가

※ 위 '보수 산정방식' 제9항의 집단사고 할증을 적용 시 중복적용 불가

Ⅲ. 단순사고 적용방식

□ 적용대상 및 보수기준

대 상 건	보 수
가계성 도난보험	35만원
구내치료비	
비용성 담보 (법률비용담보, 6대가전담보, 골프용품손해, 휴대품손해)	
현장 조사 시행건으로 청구포기 등으로 실질적인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	
차량 파손 사고	
손해액 3백만원 이하 대물 사고	
가입한도내실손담보로 손해액 5백만원 이하건	

□ 산정기준

동계약서는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사항으로 제3자에게 사본의 제공 또는 열람을 제한합니다.